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 10. 16 선고 2017가단16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4. E

피고4의 법정대리인(친권자모) C

5. 마개명 전 이름: G)

6. H

7. I

8. J

9. K

피고 8, 9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도(춘천분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수복

변론 종결 2018. 9. 18

판결 선고 2018. 10. 16

주 문

1. 피고 F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68지분에 관하여 1983. 1.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 E, H, I, J, 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B, 단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68지분에관하여, 피고 C는 위 각 부동산 중 9/168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은 각 6/186지분에 관하여, 피고 I, J, K은 위 각 부동산 중 28/ 168지분에 관하여 각 1983 .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1983. 1.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망 인의 사망 등으로 피고들이 주문 제1항 및 청구취지 기재 지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F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위 매매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68지분에 관하여 1983. 1. 10.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반면, 원고의 나머지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피고들의 실제 상속분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하종민

별지